

규 칙

서울특별시립 새마을사회복지관의 제를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청 안 내 시
1972년 8월 16 일

● 서울특별시규칙 제 1240 호

서울특별시립새마을사회복지관 규칙 제 1 조 (목적)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새마을사회복지관 (이하 " 복지관 " 이라 한다) 의 조직과 사무분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위치) 복지관의 위치는 따로 고시한다.

제 3 조 (직무) 복지관을 관할 구역내의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.

1. 생활보호사업
2. 아동복지사업
3. 부녀자 선도사업
4. 사회복지상담
5.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
6. 기타 각종 복지 증진사업

제 4 조 (관장) ① 복지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복지관 관할 구 사회과장이 겸직한다.

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의 지휘 감독한다.

제 5 조 (사무장) ① 복지관에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.

② 사무장은 복지관 직무수행에 대하여 관장을 보좌하며 관장 요구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6 조 (정원) 복지관에 관장이외인 두는 공무원의 성원은 따로 정한바에 의한다.

제 7 조 (퇴임규정) 복지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197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 제 113 호

도시계획소보

일 부 변경

1. 당시 관내 도시계획소보 변경을 도시계획법 12 조 및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한다.

2. 변경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정세민부사실에 의거하여 도시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급한다.

3. 노. 선 및 경 표시

구분	도면	유형	번호	부원	인장	기	계	종	계	비	고
기	소도	3		6	30	간현통	427-9	간현통	427-1	구거북계	구간
면	"	4		4	30	"	"	"	"	으로	인한
기	"	1		10	30	간현통	427-1	간현통	427-3	로	복
면	"	2		8	30	"	"	"	"	속	소

별첨 도면표시와 간유(도면번호)
 도면유 서울시청 도시계획과
 및 서울구정시민봉사실령 보관.

1972. 7. 16
 서울특별시청

사 령

① 1972. 8. 16.

지하철 제1선본부 선부를 명함
 지하철 제1선본부 선부를 명함

성북구 도북기차 공차임
 구리구 명함
 성북구 도북기차에 포함

② 1972. 8. 18.

성북구 도북기차 공차임
 시설과공입농수계장 지부내외를
 명함

시부전설 도북기차 장속 환
 사업소 (소광지부내외)
 성북구 도북기차에 포함

간현통사업소 지상도북기차 리 용
 (제회표사지) (설계계장)
 시부전설사업소 소광에
 포함

서울특별시청